

제283회 임시회  
2009. 9. 21( 월)

# 심 사 보 고 서

○충북미래관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충 청 북 도 의 회  
행 정 소 방 위 원 회

# 충북미래관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09. 9. 21.  
행정소방위원회

##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9년 9월 3일

충청북도지사

2. 회 부 일 자 : 2009년 9월 4일

3. 상 정 및 의 결 일 자

제283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소방위원회(2009. 9. 15.)  
상정,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질의·토론, 심사의결(원안가결)

## II.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정책기획관 강호동)

### 1. 제안이유

충북미래관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가. 충북미래관의 위치(안 제2조)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 121-64에 둠.

나. 충북미래관의 기능(안 제3조)

- ▶ 충북학사와 관련한 기숙사 및 도서관 등 학습공간
- ▶ 투자유치와 국회, 정부기관과의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실
- ▶ 그 밖에 충청북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다. 위탁운영(안 제4조)**

- ▶ 충북미래관 시설물의 관리는 재단법인 충북학사에 위탁함.
- ▶ 도지사는 위탁에 따른 충북미래관의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예산 및 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라. 사용료의 부과(안 제6조)**

- ▶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충북미래관 시설물 일부를 사용하는 자에게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하여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 시설물과 물품의 무상사용 규정 마련
  - 충북학사 기숙사 기능수행 등을 위한 수탁법인
  - 도내 기초자치단체가 행정목적에 위하여 직접 필요로 하는 경우
  - 도 및 기초자치단체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마. 부칙에 의한 다른 조례의 개정**

- ▶ 「충청북도학사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 제2조 중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76-2”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 121-64 충북미래관 내”로 변경
  - 제8조제3항을 삭제

**Ⅲ. 검토보고 요지**

(행정소방수석전문위원 양권석)

**가. 개정개요**

제정조례안은 충북미래관 건립에 따른 충북미래관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이 제정조례안은 충북미래관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충북미래관의 위치, 충북미래관의 기능, 충북미래관의 위탁관리, 충북미래관 시설물 사용에 대한 사용료부과 등과 다른 조례의 개정 등이 규정되어 있음.

충북미래관은 시설이 낙후된 충북학사를 대신하여 건립된 것으로 충북학사와 관련한 기숙사 및 도서관 등 학습공간을 확충하여 충북 출신의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 및 학습공간으로 유용하게 사용되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투자유치와 국회, 정부기관과의 업무추진 등을 위한 사무실을 제공하는 등 그 유용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 또한 본 조례를 통하여 충북미래관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대한 근거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이견이 없음.

####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V. 토론 요지 : “생략”

#### VI. 심사 결과 : 원안가결

####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IX.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북미래관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 충북미래관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412
----------	-----

제출연월일 : 2009년 9월 3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 제안사유

- 충북미래관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 주요내용

- 충북미래관의 위치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 121-64에 둠  
(안 제2조)
- 충북미래관의 기능(안 제3조)
  - 충북학사와 관련한 기숙사 및 도서관 등 학습공간
  - 투자유치와 국회, 정부기관과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실
  - 그 밖에 충청북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 위탁운영(안 제4조)
  - 충북미래관 시설물의 관리는 재단법인 충북학사에 위탁함.
  - 도지사는 위탁에 따른 충북미래관의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예산 및 기금 등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함.
- 사용료의 부과(안 제6조)
  -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충북미래관 시설물 일부를 사용하는 자에게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하여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시설과 물품의 무상사용 규정 마련
  - 충북학사 기숙사 기능수행 등을 위한 수탁법인
  - 도내 기초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을 위하여 직접 필요로 하는 경우
  - 도 및 기초자치단체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 부칙에 의한 다른 조례의 개정

- “충청북도학사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
  - 제2조 위치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76-2”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 121-64 충북미래관 내”로 변경
  - 제8조제3항을 삭제

의안전문 : 붙임

관련법령 발체 : 붙임

충청북도 조례 제 호

## 충북미래관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북미래관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충북미래관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 121-64에 둔다.

제3조(기능) 충북미래관은 다음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충북학사와 관련한 기숙사 및 도서관 등 학습공간
2. 투자유치와 국회, 정부기관과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실
3. 그 밖에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탁관리) ① 충북미래관 시설물의 관리는 재단법인 충북학사(이하 “수탁법인”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충북미래관의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예산 및 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수탁법인의 책무) ① 수탁법인은 충청북도로부터 지원받은 경비를 충북미래관 관리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시설물 관리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사항을 위반하여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의 부과) 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충북미래관 시설물 일부를 사용하는 자에게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하여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설과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제3조제1호의 기능수행을 위하여 수탁한 법인

2. 도내 기초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을 위하여 직접 필요로 하는 경우
3. 그 밖에 충청북도 및 기초자치단체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학사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76-2 번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 121-64 충북미래관 내”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중 “(채무)”를 “(책무)”로 한다.

제8조제3항을 삭제한다.



# 관 계 법 령 발 취

## 【지방자치법】

제22조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20조(수탁재산의 관리) ①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 목적에 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관리상황의 보고 등) ① 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연간 관리상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관리상황을 확인·조사하거나 수탁자로 하여금 그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75조(무상 대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 또는 사업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 기간을 정하여 무상으로 소관 물품을 대부할 수 있다.

1.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그 물품을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려는 경우
2.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그 물품을 해당 위탁 업무에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